■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9호서식] <개정 2026. 1. 8.>

화약류 저장소 설치(변경) 허가신청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10일

신청인	성 명		주민등록번호
	주 소	(전화번호 :)	
법인	명 칭		
	주 소	(전화번호 :)	
신청 내용	업체명		저장소 설치목적
	사무소 소재지	(전화번호 :)	
	저장소 종류 및 동수		
	종류별 허가 저장량		
	저장소 위치	변경 전	
		변경 후	
	준공 및 사용 연월일		변경사유

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약류 저장소 (설치·변경) 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시·도경찰청장, 경찰서장 귀하

첨부서류	1. 신체검사서(「건강검진기본법」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으로 한정합니다) 1부 2. 저장소의 설계도 및 그 명세서 각 1부 3. 저장소 및 그 부근(사방 500미터 이내)의 약도(변경허가의 경우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 4.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검토의견서 1부(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5. 안전점검계획서 및 위해예방계획서 각 1부	수수료 뒤쪽 참조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유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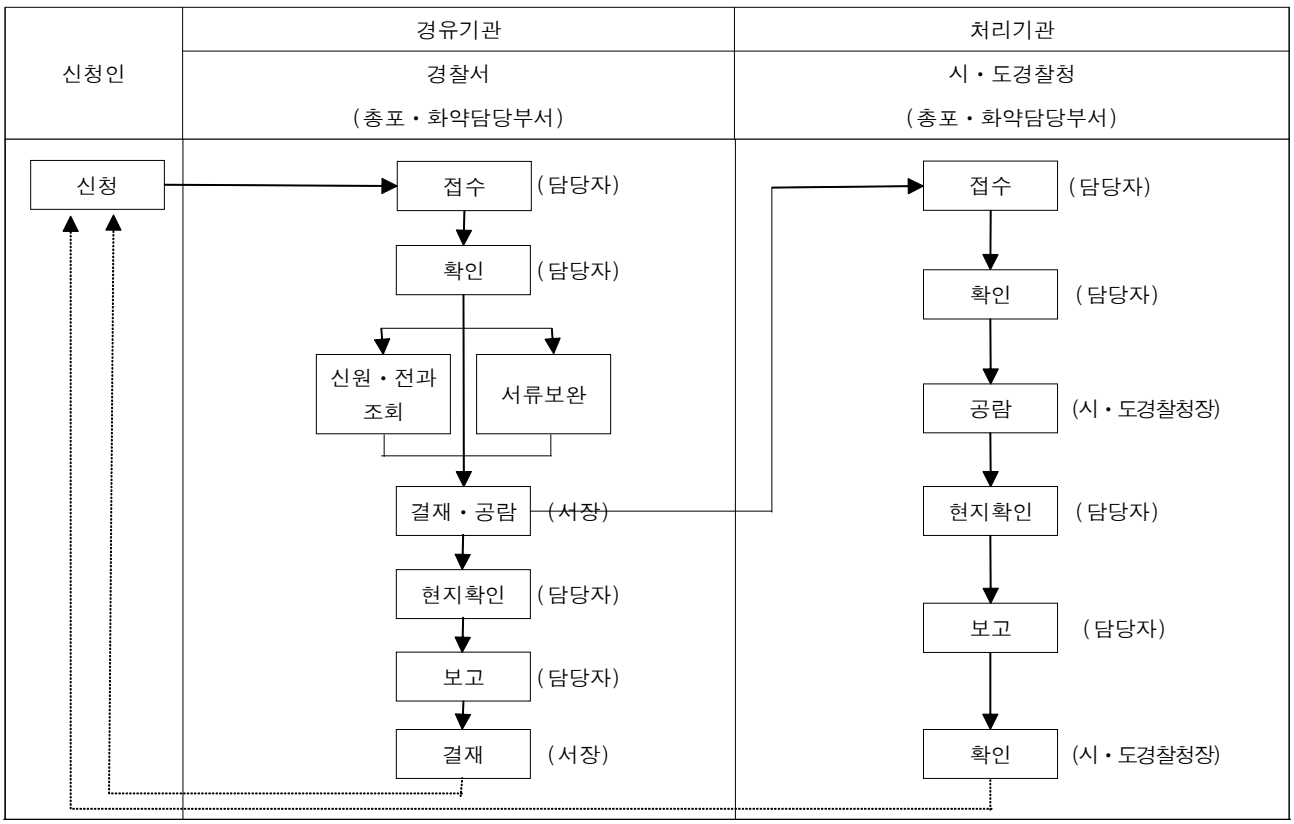
○ 저장소설계명세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사방 500m 내의 상황 및 보안물건과의 보안거리

나. 구조설비·설계내용

다. 그 밖에 필요한 사항(방범·방화 시설 등)

처리절차



수수료

1. 1급 저장소 설치허가 : 10,000원
2. 2급 저장소 설치허가 : 8,000원
3. 3급 저장소 설치허가 : 5,000원
4. 수중·실탄·꽃불류·장난감용 꽃불류·도화선 저장소 및 간이저장소 설치허가 : 3,000원
5. 저장소 설치 변경허가 : 5,000원